

「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
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정도 의원 외 12명

2. 제안이유

- 노유자시설인 경로당은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복지시설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야 함.
- 공동주택 내 경로당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하지만 지원 수준이 미비하며, 특히 준공연도가 오래되거나 세대수가 적은 공동주택 내 경로당의 경우 자체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움이 있음.
- 이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경로당에 한하여 예외규정을 신설하고, 이를 통해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지원조건 신설(안 제5조제1항제3호라목)
 - 안 제15조 단서 신설에 따른 지원조건 신설(입주민 공유시설)
- 공동주택 내 적용제외 단서 신설(안 제15조)
 -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이면서 세대수 300세대 이하의 경우
- 부칙 신설(제2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노인복지법」 제36조, 제37조 및 제47조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2. 10. 12. ~ 10. 17.) 결과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자체 관리가 어려운 공동주택 내의 경로당에 개보수비 등을 지원하고자 발의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, 세대수 3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 내 경로당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설이 많으나 현재 우리 시 조례 체계 안에서는 지원이 어려움.
- 오래되고 세대수가 적은 공동주택 내 경로당에 한하여, 본 조례와 「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」에 예외규정을 신설하고 개보수비 등을 지원한다면 쾌적한 경로당 환경을 구축하여 어르신들의 생활 복지 수준을 올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함.